# 이사회 규정

제정 1964. 6. 24 개정 2024. 3. 25

## 제 1조 (목 적)

본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 3조 (권 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 제 4조 (구 성)

이사회는 등기이사로 구성한다.

# 제 5조 (의 장)

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 제 6조 (종 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 제 7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부재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(의장)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3인 이상의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 8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 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①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 제 9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와 제 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.
-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 제 10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  - 가. 주주총회 소집
    - 나. 재무제표의 승인
    - 다. 정관의 변경
    - 라. 법정준비금의 감소
    - 마. 자본의 감소
    - 바.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 합병 및 회사의 계속
    - 사. 이사의 선임 및 해임, 보수의 결정
    - 아.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

- 2. 경영에 관한 사항
  - 가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
  - 나.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  - 다. 준법지원인의 임면 및 준법통제 기준의 개폐 등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- 라. 그 외 회사경영상 중대한 재무·비재무적 리스크 관련 사항
- 3. 재무에 관한 사항
  - 가.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 - 나.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
  - 다.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
  - 라. 준비금의 자본전입
  - 마. 주식의 소각
  - 바. 사채의 발행
  - 사. 기타 중요한 타법인 출자, 출자지분 처분, 담보제공, 채무보증 등
- 4. 이사에 관한 사항
  - 가.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,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
  - 나.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
  - 다. 대표이사의 선임·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
- 5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, 이사회 의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
#### 제 11조 (위 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#### 제 12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서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 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# 제 13조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제 14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의 경우,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 할수 있다.

## 제 15조 (의 사 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한다.

# 제 16조 (간 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의장은 간사를 지정하고,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 제 17조 (사외이사 지원)

-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사외이사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 되는 경비를 부담한다.
- ② 회사는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에게 음식물, 선물, 교통비, 출장비, 수당, 사례비 등을 제공하며,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 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

이사회 규정 제11조 (위임)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다.

- ① 건별 자본금 50% 미만의 차입
- ② 수출입 관련 무역금융 및 지급보증 회전한도 설정
- ③ 어음할인,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
- ④ 자본금 10% 미만의 출자 또는 주식의 매입 및 매각
- ⑤ 자금운용을 위한 유가증권(주식을 제외)의 매입 및 매각
- ⑥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 보증
- ① 거래금액이 자본금 10% 미만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자금, 자산의 거래 또는 임대차
- ⑧ 기존 보증 및 기존 차입의 기간 연장
- ⑨ 기타 상법, 정관,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의 일상업무